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10. 18 선고 2022가단57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믿음
담당변호사 김형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김대현
변 론 종 결 2022. 8. 23.
판 결 선 고 2022. 10. 18.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2. 16.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위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9. 2. 7. C에게 600만 원을 변제기 2020. 2. 6., 이자 연 12.57%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C이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39933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13. "C은 원고에게 6,179,901원 및 그중 5,051,369원에 대하여 2020.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의 아버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2. 16.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C, E, F이 있고, 상속지분은 피고가 3/9, C 등 3명의 자녀가 각 2/9이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C, E, F은 2019. 2. 16.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9. 3.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상주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피고와 C 사이에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고 항변한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3,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망인과 피고는 1970. 5. 29. 혼인신고를 마치고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49년간 혼인생활을 하였다.

② 망인은 1991. 4. 19.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 8. 28. 화해를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각 부동산 지상의 상가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1. 4. 19. 망인 명의로 1989. 5.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과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전인 1968. 10. 20.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거주하면서 자전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망인의 사망 후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계속 거주하면서 2019. 3. 1.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상호: G)을 마치고 자전거 도소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③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고 불과 9일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은 6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C은 2019. 12. 24.까지 이 사건 대여원금과 이자 일부를 지급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인